

재무감사

감사보고서

- 문화재청 등 3개 기관 재무감사 -

2017. 4.

감사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결과.....	3
1. 처분요구 사항.....	3
가. 명세.....	3
(1) 정책연구용역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4
(2) 체납과태료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10
(3)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주의).....	21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문화재청 등 3개 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성과보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7. 3. 23.부터 2017. 4. 5.까지(10일간) 감사인원 17명(회계사 5명 포함)을 투입하여 문화재청 등 3개 기관이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행한 세입·세출 및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국가재무제표 작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7. 4. 4. 및 같은 해 4. 5.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7. 4. 27.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1. 처분요구 사항

가. 명세: 별첨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정책연구용역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2014. 1. 28.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63호, 이하 “방송통신연구지침”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 계 51억여 원을 정기·수시정책연구 예산에 반영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정책연구용역 가격결정 부적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제51조 제2항과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책연구 용역의 연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4. 1. 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제7조, 제8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을 이유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¹⁾하고, 그 우선협상대상자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²⁾) 이하의 가격에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종 정책연구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면서 제안서 평가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등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와 함께 가격도 입찰하도록 한 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연구지침 제19조와 제20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수행계획서’(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에 해당, 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³⁾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찰가격을 제출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가격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23.~4. 5.)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125건(계약금액 계 5,128백만여 원)에 대하여 가격을 고려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별 점수(70~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해당 기술 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방송통신연구지침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입찰로 공고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정책연구의 목표·내용·추진방법·추진체계 및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계약절차와 다르게 가격입찰 없이 예산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2. 수시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2.1억 원)⁵⁾ 미만인 경우 등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면서 제안서를 제출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들이 제안서 작성 등 입찰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도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위 125건의 정책연구용역 ([표 1] 참조) 중 17건의 수시정책연구용역을 수행계획서 평가의 방식으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하면서 [표 2]와 같이 17건 전체를 단 5일간만 입찰공고⁶⁾하는 등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위 17건의 정책연구용역은 단 1건도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모두 수의계약(계약금액 계 555 백만 원, 예산금액과 동일)을 체결하였다.

-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고시금액」(2014. 12. 12. 기획재정부고시 제 2014-28호)에 따라 2015. 1. 1.부터 용역·물품에 대한 고시금액이 종전 2.3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변경되었음
6)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르면 입찰공고기간은 입찰서(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의 경우 재입찰공고시 2015. 9. 12.부터 같은 해 9. 21.까지 8일간 공고하였으나 추석연휴기간(2015. 9. 14.~9. 16.)을 제외하면 사실상 5일에 불과함

[표 2] 연도별 수시정책연구용역계약 등 현황

(단위: 백만 원, 건, 일)

연도	차수	예산금액	발주 건수	입찰공고 현황						계약금액	계약업체 수		
				최초 입찰공고 현황			재공고입찰 현황						
				개시일자	입찰마감일자	공고기간	개시일자	입찰마감일자	공고기간				
합계	-	555	17	-	-	-	-	-	-	555	-		
2014년	1차	140	4	2014. 7. 25.	2014. 7. 31.	5	2014. 8. 1.	2014. 8. 7.	5	140	4		
2015년	1차	110	3	2015. 7. 28.	2015. 8. 3.	5	2015. 8. 4.	2015. 8. 10.	5	110	3		
	2차	70	3	2015. 9. 9.	2015. 9. 15.	5	2015. 9. 16.	2015. 9. 22.	5	70	2		
2016년	1차	235	7	2016. 9. 5.	2016. 9. 11.	5	2016. 9. 12.	2016. 9. 21.	8	235	5		

주: 입찰공고기간에 서입찰공고개시일자 및 입찰마감일자는 제외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다수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방송통신 연구지침 제20조의 규정 등을 국가계약법령과 상충되지 않게 개정하고, 앞으로 수시정책연구에 대해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함으로써 입찰참가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입찰참가자의 「정책연구 수행계획서」에 대한 평가만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0조의 규정 등을 국가계약 법령에 부합되게 가격까지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에 따라 용역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할 경우 입찰참가자들이 제안서 작성 등 입찰참가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입찰공고하도록 하고, 긴급 또는 소액의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하도록 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체납과태료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법인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를 납부기한(30일 이내)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납자 또는 체납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20일 이내)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는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 관서의 장은 국가채권 관리 및 연체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압류·가처분·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납부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이행의 청구와 체납처분의 진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234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⁷⁾는 2006년부터 NICE평가정보주식회사(대표이사 심의영, 이하 “NICE평가정보”이라 한다)의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전자예금압류서비스 도입을 통한 체납과태료 징수 사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 2016. 2. 17. NICE평가정보의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도입하여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체납자의 금융재산(예금)을 조회하고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
 - 그 결과, 2016년 6월 말 기준 1,381건에 705백만여 원에 이르던 체납과태료 중 2016년 12월 말까지 346건에 139백만여 원의 과태료를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징수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유 여부 조회,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압류자산 가치 하락, 체납법인의 폐업 등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일 등이 없도록 하고,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하여도 전자 예금압류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압류대상 자산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2016년 말 기준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6월 NICE평가정보로부터 전자예금압류서비스 도입을 제안받고도 그 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는 등 금융재산 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별표 1] “체납과태료 현황”과 같이 2017년 4월 현재까지 체납된 과태료 118건(체납과태료 계 553백만여 원)에 관련된 117개⁸⁾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를 조회⁹⁾하여 이미 폐업한 56개 업체까지 포함하여 위 117개 체납법인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적은 채권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담당자는 2015. 7. 6.부터 2016. 8. 10.까지 등 8개 체납법인(체납금액 계 10백만여 원, 가산금 포함)으로부터 8대의 자동차를 압류하고도 2016. 12. 8.에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 감정¹⁰⁾을 의뢰한 후 2016. 12. 13. 위 공사로부터 3개 체납법인(체납금액 계 9,250천 원)의 자동차 4대(약식 감정가 12,600천 원)의 경우 체납처분 실익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2017년 4월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8) 주식회사 는 2013. 8. 16.부터 2015. 5. 12.까지 2차례에 걸쳐 과태료 등 계 35,475천 원(2017년 4월 현재 체납가산금 2,975천 원 포함)을 부과받았으나 2017년 4월 현재까지 체납 중임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행정청은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회 요청하고 있음

10) 은 자신이 직접 압류 조치한 8대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별표 3] “압류 자동차 약식 감정 등 현황”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2012. 12. 27.부터 2016. 8. 10.까지 압류하였던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2.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 감정을 의뢰하였음([별표 3] “압류 자동차 약식 감정 등 현황” 연번 20번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채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를 잘못 적용하여 2014. 4. 16. 자동차 1대를 압류하였다가 같은 해 7. 1. 압류를 해제한 후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은 그 사실을 모르고 2016. 12.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 감정을 의뢰하였음)

그리고 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같은 부서의 팀장 도 징수업무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별표 2]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련자 명세”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관련자 은 [별표 3] “압류 자동차 약식 감정 등 현황”과 같이 2012. 12. 27.부터 2016. 8. 10.까지 20개의 체납법인으로부터 압류한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 공매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채권회수 노력이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기회 일실에 따른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압류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산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 ①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자동차 외에도 예금 등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압류하는 등 압류대상 자산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과태료 등 체납자의 자산을 확인하여 압류한 때에는 조속히 감정평가를 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공매 등의 체납처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의 임무를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향유케 함으로써 방송통신의 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공복리 증진 및 창조경제에 이바지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무-비전-전략목표(2개)-프로그램목표(5개)-단위사업(10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45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3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32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을 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2. 판단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위사업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의 성과지표를 ‘LBS

(Location Base Service: 위치기반정보서비스)사업 합리화 추진율'로 선정하면서 측정 산식을 '[(위치정보교육 실시×0.4)+(앱 점검 실시×0.6)]×100'으로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I.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I-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한다
(단위사업) I-1-정보화①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성과지표) ② LBS사업 합리화 추진율(%)
(측정산식) [(위치정보교육 실시×0.4)+(앱 점검 실시×0.6)]×100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5년 4월, 기획재정부) II. 2. (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달성을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성과지표의 목적 달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목표치 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표치 달성이 용이하거나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목표치와 측정산식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위치정보교육 실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LBS사업 합리화 추진율(%)'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구성 (비중 40%)하고 있는 '위치정보교육 실시' 항목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정보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치정보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횟수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위치정보교육 현황을 검토한 결과 [표 1]과 같이 전체 사업자 수 대비 교육참석률이 최저 1.8%에서 최대 8.6%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1] 위치정보교육현황 및 교육참석률(2014~2016년)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회차 (6. 27.)	2회차 (10. 24.)	1회차 (7. 23.)	2회차 (12. 2.)	1회차 (6. 29.)	2회차 (12. 8.)
교육대상 사업자수	계(A)	769	802	898	960	1,120
	위치정보사업자수	118	122	135	144	160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수	651	680	763	816	944
교육참석 사업자수(B)		57	69	51	17	55
참석률(C=B/A×100)		7.4	8.6	5.7	1.8	5.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재구성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 관점에서 성과지표인 ‘LBS사업 합리화 추진율’을 측정할 수 있는 ‘교육참석률 개선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치정보교육 실시’ 횟수만을 측정산식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목표치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연 2회로 정하여 목표치를 전부 달성한 것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나. ‘앱 점검 실시’의 경우

또한 위 측정산식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앱 점검 실시’ 항목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1. 29.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업무위탁 협약(협약금액 9,599백만 원)을 체결하고 진흥원으로 하여금 이용빈도가 높은 스마트폰 앱을 점검하고, 사업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이 스마트폰 앱을 점검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개선하면서 측정한 2015년과 2016년의 개선이행률이 [표 2]와 같이 각각 71%, 70%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스마트폰 앱 점검 대상 및 점검 실적 등 현황

(단위: 개, 건, %)

구분	점검 대상 앱 개수	점검 실적			
		점검 건수	법령 위반건수(A)	개선 완료 건수(B)	개선이행률 (C=B/A×100)
2014년	15,000	16,020	2,049	900	44
2015년	15,000	15,000	1,399	991	71
2016년	15,000	15,663	894	628	7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 관점에서 성과지표인 ‘LBS사업 합리화 추진율’을 측정할 수 있는 ‘법령 위반 개선이행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횟수를 측정 산식으로 정하였고, 15천 개¹¹⁾ 이상의 앱을 점검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과가 달성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위치정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위탁 협약대로 15천 개의 앱을 점검

1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용빈도가 높은 15천 개 이상의 스마트폰 앱을 점검하도록 협약 체결

하기만 하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측정산식을 설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연례적으로 목표치가 달성되는 것으로 성과가 보고되고 있어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성과보고의 합리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표 3] 'LBS사업 합리화 추진율'의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구분	목표	실적	달성을
2014년	100	100	100
2015년	100	100	100
2016년	100	102.5	102.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교육 참석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앱 점검 결과 이행률을 관리하여 성과 지표 측정산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단위사업의 목적 달성을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고 성과보고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LBS사업 합리화 추진율'의 측정산식과 목표치를 목표 달성이 용이하거나 자동적으로 달성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